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2023. 3.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나.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력(안 제6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시행(안 제8조)
- 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9조)
- 마.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지원 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발생이 예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2. 11. 4. ~ 2022.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 5)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지역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및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지원 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발생이 예상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과 경제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2554